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294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김준혁ㆍ이수진ㆍ권칠승

이기헌・조 국・부승찬

모경종 · 강경숙 · 백승아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연 입장권등을 대량 구매하여 웃돈을 받고 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여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사회 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소수의 암표 판매자들이 부당하게 대량의 표를 구매하여 재판매할 경우 실제 공연을 관람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표를 구할 수 없거나 비싸게 구매하게 되어 소비자 편익이 감소하고, 공 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해치며, 입장권등의 판매자의 업무를 방해 하므로 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연의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

하지 않고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거나 부정판매 전 매점매석을 하는 경우(판매에 이르지 않고 환불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금지규정과 제재규정을 보완하고, 부정판매로 인한 이득액의 몰수·추징 규정을 신설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금지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암표근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금지행위 유형을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 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1호),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제2호),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 선하는 행위(제3호)로 세분화 함(안 제4조의2).

-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3 신설).
- 다.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되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나 재판매가격이 공연마다 다르다는 점과 공연 입장권등의 평균 가격을 고려하여 처벌 기준이 되는 이득액의 크기를 '정액'이 아닌 '판매 정가 (판매한 입장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배액'으로 규정하고, 제4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 · 추징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호 및 제41조의2 신설).
- 라. 제4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호, 안 제41조의2 신설).
- 마. 제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와 제4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 게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3조제

2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조의2(입장권등의 구매방해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2.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3.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4조의3을 제4조의4로 하고,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신고포상금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제7호 중 "제40조제1호·제2호"를 "제40조제2호·제3호"로 한다.

제4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판매한 입장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한 자

제4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만의 이득 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몰수·추징) ① 제40조제1호 및 제41조제1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정한다.

제42조 본문 중 "제40조"를 "제40조(제1호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43조제2항제1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 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 2. 제4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액을 취득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혀 행

제4조의2(입장권등의 부정판매 금 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은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 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 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 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 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 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 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 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 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 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 정 안

제4조의2(입장권등의 구매방해 금 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공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2.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기 위하여 입장권등을 구매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공정한 입장권등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
- 3.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신 설>

제4조의3 (생략)

제33조(행정처분) ① 특별자치시 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 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 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1. ~ 6. (생략)
- 7. 그 밖에 <u>제40조제1호·제2호</u> 또는 제41조제2호·제6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형을 선고 받고 3개월 이내에 같은 위반 행위를 한 자
- ② (생략)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영업으로 판매 정가를 넘는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제4조의3(신고포상금 지급)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u> </u>
<u>세4조의4</u> (현행 제4조의3과 같음)
세33조(행정처분) ①
1. ~ 6. (현행과 같음)
7 <u>제40조제2호·제3호</u>

- 7. ---- <u>제40조제2호·제3호</u> ------
- _____
- ② (현행과 같음)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u>1</u>. ~ <u>6</u>. (생 략)

-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

2. ~ 6. (생 략) <u><신 설></u>

제40조(벌칙)
1. 제4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판매한 입장권등의
평균 정가를 말한다. 이하 같
다)의 50배 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이
 득액"이라 한다)을 취득하거
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까지와 같음)
제41조(벌칙)
1. 제4조의2제3호를 위반하여
판매 정가의 5배 이상 50배 미
만의 이득액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
2. ~ 6. (현행과 같음)
제41조의2(몰수·추징) ① 제40조
제1호 및 제41조제1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제4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가 남인 또는 개인의 점무에 관하여 제4 인조 또는 제41조제2호 · 제6호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43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신 설>

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
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가액(價
額)을 추정한다.
제42조(양벌규정)
<u>제40</u>
조(제1호는 제외한다)
제4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제4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자
판매 정가의 5배 미만의 이득

② 제1항에 따른 재물을 몰수하

	액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
	여금 취득하게 한 자
<u>1</u> . ~ <u>4</u> . (생 략)	<u>3</u> . ~ <u>7</u> . (현행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